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272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2조)

시행령에 근거하여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계 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전문기관 지정요건 중 “통계 작성 실적”을 삭제하여 요건을 완화함

나.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구체화(안 제5조 신설)

뿌리기업 확인 신청 절차, 제출서류, 관련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신청 등 구체화(안 제6조의2 신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관련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5조를 제5조의2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을 증명하는 서류
2.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기업의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
4. 그 밖에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현황 확인서
2. 전년도 월별 임금 대장
3. 최근 3년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내역서
4.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최근 3년간 산업재해를 확인 서류

7.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8. 그 밖에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은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구분	☐ 신 규 ☐ 연 장 ☐ 재발급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	FAX () -
	E-mail		
업무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사업개시일	종사자수		명
업종구분			
주요생산품			
활용기술			
용도	고용허가용() 사업신청용() 금융지원() 기타()		
	세부 사용용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뿌리기업 임을 확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1.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 임대차계약서 등) 2. 매출액 명세서 3. 품목 설명서 (품목 설명서, 카달로그 등) 4.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본 5. 그 밖에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및 실제 조사	확인 여부 심사	판 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뿌리기업 확인서

1. 발급번호: 제 호
2. 기 업 명 (업종):
3.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4. 대 표 자:
5. 소 재 지:
6. 사업개시일:
7. 유효기간: 0000.00.00 ~ 0000.00.00(3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 기업을
뿌리기업으로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설립일자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	FAX () -
	E-mail		
업무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사업개시일	종사자수		명
업종구분			
주요생산물			
뿌리기업 인증 여부	☐ 뿌리기업확인서(발급번호 기재) 1 9 1 2 3 - 4 5 6 7 8 * 붉은색 숫자는 예시		☐ 뿌리기술전문기업(발급번호 기재) 1 9 1 2 3 4 - 5 6 7 8 * 붉은색 숫자는 예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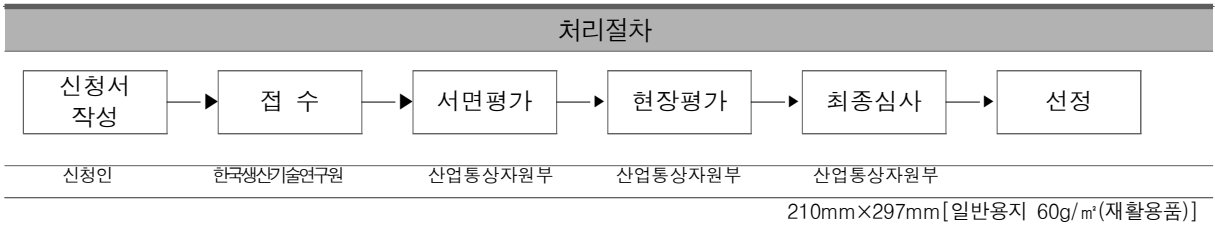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1. 기업현황 확인서 2. 전년도 월별 임금 대장 3. 최근 3년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내역서 4.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 서류 7.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8. 그 밖에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

1. 선정번호: 제 호
2. 기 업 명(업종):
3.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4. 대 표 자:
5. 소 재 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 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u><신설></u>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① ----- ----- ----- ----- -----.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u>2. 통계 작성 실적</u> 3. (생략) ③ · ④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② -----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을 증명하는 서류

2.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기업의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

4. 그 밖에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생 략)
<신 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
우만 해당한다)

3. 국세 · 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4호
의3서식과 같다.

제5조의2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
리기업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기업현황 확인서

2. 전년도 월별 임금 대장

3. 최근 3년간 고용 · 산재 보수
총액 신고 내역서

4.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
서류

7.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8. 그 밖에 일하기 좋은 뿌리기
업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
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
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
우만 해당한다)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은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u>정한 사항 외에 일하기 좋은 뿌</u> <u>리기업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u> <u>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u> <u>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	---